의안 번호	117

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10.27)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10.27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10. 16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10. 2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10.27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)

가.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독거노인·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, 활동량감지기 등을 설치하고,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·질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예방적 돌봄 사업으로

나. 민간 위탁 기간이 '26. 12. 31.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6조제2항제1호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나. 사 업 비 : 1,097백만원(국 359, 도 328, 시 410)

<2027년 사업예산>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소 요 예 산(재원별)				비 고
	합계	국비	도비	시비	
계	1,096,70	358,631(33%)	327,535(30%)	410,534(37%)	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	717,26	358,631(50%)	179,316(25%)	179,315(25%)	• 인건비 지원 : 11명 - 국비지원 7명 - 도비지원 4명 - 급여 및 수당 지원 • 장비운영비 : 4,335대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(도추가)	296,43	-	148,219(50%)	148,219(50%)	
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	83,000			83,000	• 센터운영비

예 산 상 세 내 역			
합계	인건비(33%)	장비운영비(59%)	센터운영비(8%)
1,096,700	363,204	642,120	91,376
<참고>	기본급(2,236천원) + 사회보험료 등	월10천원 ~ 월15천원 (댁내장비 설치년도별 차등)	일반운영비(전기·통신비 등), 차량유지비(4대), 수당(출장여비, 야간 휴일 출동수당 등)

다. 사 업 량 : 대상자 4,335세대

라. 제공인력 : 응급관리요원 11명(국비지원 7명, 도비지원 4명)

마. 수행기관 : 1개소

<현재 수행기관 현황>

사업기관명	소재지	관장	종사자 수	비 고
창원시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센터 (마산종합사회복지관)	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	박해긍	11명 (국비지원 7, 도비지원 4)	지역센터 사무실 창원시 무상 임대

바. 위탁사무

○ 독거노인・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

- 지역센터 수행인력(응급관리요원) 채용・교육・복무관리
- 서비스 대상자 모집, 장비사용법 교육
- 독거노인, 장애인 활동 데이터 모니터링
-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
- 감지기 등 댁내 장비 설치 상태, 작동 여부 등 점검 및 관리
-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상태 확인, 현장 출동 및 119 등 관계기관 연계
- 이웃주민 등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응급안전망 구축
-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사.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아. 선정방법 :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

4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적정성 검토 결과

가. 추진근거

○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4조(안전대책 강구)

○ 「2026 독거노인・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」(보건복지부)

○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), 제9조(수탁기관 선정 방법), 제10조(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・운영)

나.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독거노인・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,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운영이 적정함.

○ 민간기관의 돌봄 경험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・응급관리요원 관리, 댁내장비 운영・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.

○ 상시 모니터링과 안전확인, 현장 출동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,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
5. 성과평가 결과

가. 평가개요

○ 평가근거
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16조의2(성과평가)
- 2026년 독거노인・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
○ 평가내용 : 위탁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평가항목	배점(100점)	평가내용
기관운영	20점	• 지역센터 예산 사용의 적절성 및 인사관리 등
서비스관리	70점	• 서비스제공계획의 체계성 및 대상자 관리 • 댁내장비 관리의 적절성 • 보안관리 및 서비스 제공 실적, 대상자 만족도
운영종합	10점	• 기관운영 의지 및 기관의 전반적 사업 운영 노력 등

나. 평가결과

합계(100점)	기관운영(20점)	서비스관리(70점)	운영종합(10점)
89점	16점	63점	10점

다. 총평

○ 성과평가 결과 총 89점으로, 대상자 및 댁내 장비 관리, 응급상황 대응 등 위탁사무를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.

○ 평가 시 지적된, 목표치(95%) 대비 4% 미달했던 댁내장비 설치율은 현재 99%로 개선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함.

○ 댁내장비 정상가동률을 98% 이상 유지하고, 연간 안전확인 36,947건(전화 32,756건, 방문 4,191건)을 실시하여 활동 미감지 등 이상징후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.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후원·연계활동으로 대상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.

○ 전문인력과 현장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,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,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함.

6. 동의사항

가. 동의내용

○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

나. 위탁기간

○ 2027. 1. 1. ~ 2029. 12. 31.(3년)

7. 향후 추진계획

가.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: ’26. 11월

나.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: ’26. 11월

다. 수탁 선정기관 결과 통보 및 공고 : ’26. 12월

라. 위·수탁 계약 체결 : ’26. 12월

마.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추진 : ‘27. 1월

8. 관련법규

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4조(안전대책 강구)

9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○ 본 동의안은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(이하 "민간위탁 조례"라 한다) 제6조제2항제1호[1]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.

○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응급상황 대처에 취약한 독거노인·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, 활동량감지기 등을 설치하고,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·질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예방적 돌봄 사업임.

○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제2항[2]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와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4조[3]는 장애인의 특성을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1)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

2)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또는 **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**
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4조(안전대책 강구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·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, 점자·음성·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,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**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**

○ 법령의 취지와 독거노인·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, 전문인력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므로 본 사무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무로 판단됨.

○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제2항은 “위탁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재위탁 기간(2027. 1. 1. ~ 2029. 12. 31., 총 3년)은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.

○ 2026년 9월 실시한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르면 기존 수행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는 총 89점[4]으로 확인됨.

○ 다만, 개선사항으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미흡, 대상자 안전확인 방식 다양화 방안 필요성 등이 제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차기 수탁기관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○ 2027년도 사업예산은 2026년 예산액 대비 19.23%(176,871천원) 증가한 1,096,700천원으로 센터운영비가 아닌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즉, 사업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. 다만, 사업예산이 확대된 만큼 집행기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성과관리 및 지도·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4) 100점 만점

<2026-2027 사업예산 비교>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2027	2026[5]			비 고
		본예산	추경1회	예산액	
계	1,096,700	807,594	112,235	919,829	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	717,262	662,594	2,192	664,786	• 인건비 • 장비운영비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(도추가)	296,438	-	127,043	127,043	
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	83,000	145,000	△17,000	128,000	• 센터운영비

주: 단위절사하여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○ 2027년도 사업예산의 약 59%인 642,120천원이 장비운영비인 만큼 대상자 선정 및 장비 설치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이고 장비별 정상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비가동률 목표치인 95%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임.

○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경쟁 절차로 선정하려는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재위탁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 방지,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 확보, 성과평가 지적사항의 개선방안 도출, 장비·예산 관리의 내실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10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5) 1차 추경까지 반영

11. 토론요지: 없음

12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(동의)**

13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14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